

$$\text{가족돌봄휴가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} = 10\text{일} \times \frac{\text{계약월수(일 단위 절사)}}{12}$$

※ 유급의 경우 연간 자녀수 +1일 가능

※ 연간 누적관리 상 유,무급을 합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

- ③ 순회교사(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)의 학습휴가는 「교원휴가에 관한 예규」에 따르며,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부여함(「교원휴가에 관한 예규」제8조제3항)

$$\text{학습휴가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} = 5\text{일} \times \frac{\text{계약월수(일 단위 절사)}}{12}$$

## 5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

가. 관련 : 국가공무원법 제64조,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,

    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예규(인사혁신처예규 제64호)

나.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(계약내용에 의함)

- 1)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
  - 2) 명예교사,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
  - 3) 산학겸임교사는 「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」에 따름
- ※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

## 6 정치활동 금지

가. 관련 : 국가공무원법 제65조,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

나.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,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

## 7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

가. 계약내용에 의함 : 채용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 전 해당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방지도록 하며 계약해지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함(반드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출석(또는 서면)하여 해당교사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)